

일본, ‘정보통신법(가칭)’ 무산 원인과 통신·방송 관련법 주요 개정 내용

■ 박 민 성*

본고는 일본의 통신방송 통합법으로 추진된 ‘정보통신법(가칭)’의 무산 원인과 2010년 최종 개정된 통신방송 4개 법안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2010년 일본 통신·방송 법체계 개정의 특징은 형태적으로는 4개 법률로의 통합, 내용적으로는 TV 중심의 전통적 미디어의 역할 강조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총무성의 이러한 선택은 기존 ‘정보통신법(가칭)’이 가지고 있었던 논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시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일본 통신·방송 관련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법(가칭)’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융합 서비스의 도입과 촉진이라는 최초의 구상에서 크게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10년 개정 통신·방송법이 기존의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규제하던 관련 법률을 방송과 통신을 중심으로 크게 묶었다는 점,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 통신·방송 관련법에서도 융합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 차

I. 배 경 / 2

II. 일본의 통신·방송 법체계 개정 논의과정 / 3

1. 자민당 정부에서의 통신·방송 법체계 개정 추진과정(2005년~2009년 8월) / 3
2. 민주당 정부에서의 통신·방송 법체계 개정 추진과정(2009년 9월~현재) / 12

III. ‘정보통신법(가칭)’의 무산 원인 / 13

IV. 2010년 통신·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과 시사점 / 16

1. 통신·방송 관련 법률 개정 내용 검토 / 16
2. 통신·방송 관련 법률 개정의 시사점 / 20

V. 결 론 / 2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연구원, (02)570-4353, mspark@kisd.re.kr

I. 배경

디지털 융합 시대 각 국가의 통신과 방송 통합적 규제체계와 수평규제에 대한 엄정성에는 각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황주성, 2011).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 주도로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적합한 법체계에 대해 고민하였는데, 일본의 통신방송 법체계 개정의 시작은 고이즈미(小泉) 내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12월 총무성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법제도와 행정의 위상에 관해 검토하는 지식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신·방송의 융합 법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朝日新聞, 2010. 4. 10). 그 후 2006년부터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2006년 1월~2006년 6월)’, ‘통신방송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2006년 8월~2007년 12월)’ 등을 거쳐,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통신방송심의회 산하에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두어 통신·방송 법체계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박민성, 2009). 총무성은 긴 논의의 과정에서 2007년 12월에는 ‘정보통신법(가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2009년 8월 말에는 ‘새로운 법체계’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진행과정을 통해 일본의 통신·방송 법체계가 하나의 법률로 무난히 일원화될 것처럼 보였으나, 2009년 말에 ‘정보통신법(가칭)’으로의 일원화가 무산되었다. 대신, 총무성은 2010년 기존 통신·방송관련 8개 법률을 4개로 통합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후 2010년 3월 개정안의 일본 국회 제출, 2010년 5월 중의원 통과, 11월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일본의 기존 통신·방송 법률은 8개는 4개로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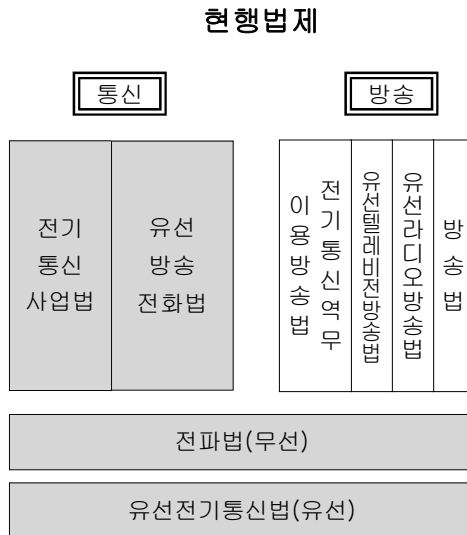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통신·방송의 법체계 논의에 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최근 개정된 일본의 통신·방송 관련 4개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법(가칭)’ 제정이 무산된 원인과 그 쟁점을 정리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2010년 11월에 최종 개정된 통신·방송 관련법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한다.

Ⅱ. 일본의 통신·방송 법체계 개정 논의과정

1. 자민당 정부에서의 통신·방송 법체계 추진과정(2005년~2009년 8월)

일본의 통신·방송 법체계는 총 8개의 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신과 방송을 구분하여 규제하였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송 관련법은 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법, 케이블TV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으로 구분되었으며, 통신 관련법은 유선방송전화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통신과 방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률에는 전파법과 유선전화통신법이 있었다.

[그림 1] 현재 일본의 통신방송 법체계



출처: 總務省(2010)

이처럼 일본의 통신·방송 법체계는 통신과 방송을 구분하고, 각 서비스 방식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형태를 보였다. 예를 들어, 방송의 경우 NHK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은 방송법, 케이블TV는 유선텔레비전방송법, 그리고 IPTV는 전기

통신역무이용방송법의 규제를 받았다. 각 통신 및 방송법에 적용되는 사업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일본 통신 및 방송 관련 법률별 적용 서비스

사업자 구분	주요 관련법	서비스/역무
전기통신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 사업자-등록 (대규모 설비 보유 사업자)
		기타 전기통신 사업자-신고
방송 사업자	방송법	NHK
		일반방송 사업자
		위탁(위성)방송 사업자
		수탁(위성)방송 사업자
	유선TV방송법	유선TV방송 사업자
	유선라디오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 사업자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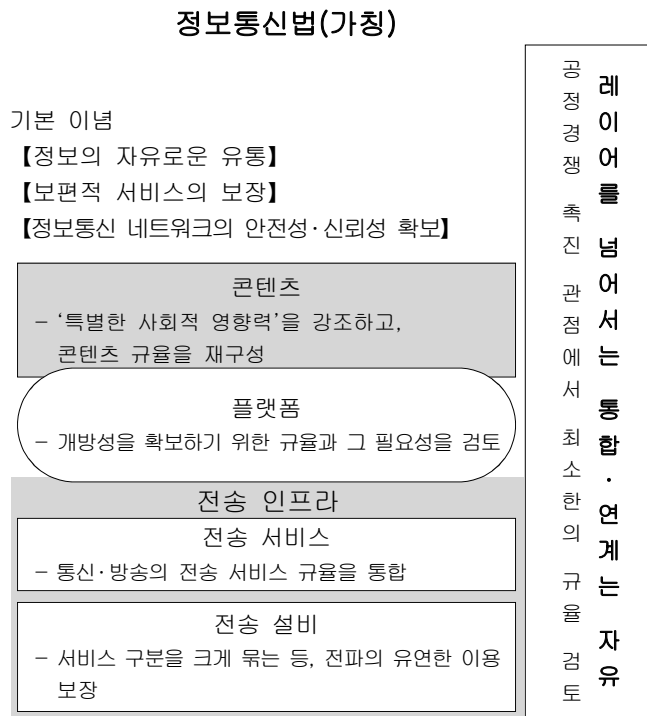
출처: 최세경(2009)

그러나 이와 같이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여 규제하는 세분화된 법체계가 일본의 정보화사회 촉진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5년 당시 총무성 장관이었던 다케나카(竹中)에 의하면 “일본에는 통신과 방송에 관한 8개의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인위적인 시장의 세분화가 자유로운 사업전개를 저해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전송 설비 사업자(인프라), 시청자나 구독자를 관리하는 사업자(플랫폼), 전송하는 내용을 제작하는 사업자(콘텐츠)의 3개 층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朝日新聞, 2010. 4. 10).¹⁾

1) 이러한 평가는 ‘(현재 일본에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가 보다 편하고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사업적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이용자들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당연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문과 (발전된 서비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국민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總務省, 2006)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2006년 1월부터 총무성은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2006년 1월~2006년 6월, 通信·放送の在り方に関する懇談会, 이하 '간담회')'를 만들어 새로운 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6년 6월에 나온 보고서에는 '간담회'가 지향했던 이러한 목표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개념을 없애고 이를 '미디어 서비스'라는 보다 큰 개념에 포함시켜, 통신과 방송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정보통신법(가칭)'의 작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규제하던 통신과 방송 분야의 법제도가 디지털 미디어의 진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법제도를 바꾸어 통신·방송의 발전을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朝日新聞, 2010. 4. 10).

[그림 2] 정보통신법(가칭)의 개요



출처: 總務省(2007)

그 뒤 총무성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통신방송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2006년 8월~2007년 12월, ‘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関する研究会’, 이하 ‘연구회’)를 만들어 통신·방송 통합 법체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2007년 12월에 발표한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는 논의의 최종 결과라 할 수 있다. 2007년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급격하게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통신·방송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이 2007년에 발표된 ‘정보통신법(가칭)’이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최종 보고서’는 ‘일본의 통신·방송 법체계를 하나의 통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콘텐츠·플랫폼·전송 인프라의 삼분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總務省, 2007).

이처럼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는 기존의 플랫폼 단위로 구분되었던 법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완전 이행하고 관련 법률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기존 통신·방송 관련법 체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최종 보고서’가 제시한 세 개의 레이어(layer)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콘텐츠 레이어이다.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는 ‘정보통신법(가칭)’ 하에서 이용자가 이용하는 매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콘텐츠 자체의 특징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통신방송 융합 시대 콘텐츠의 성격을 ‘공연성(公然性,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따라 다른 규제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민성, 2009).

다음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회’가 제시한 콘텐츠를 구분하는 첫째 기준은, ‘공연성의 여부’로서, 개인 간의 통화와 같은 공연성이 없는 콘텐츠는 통신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연성이 있는 콘텐츠는 ‘특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하는데, 영향력이 없는 것은 ‘오픈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여 홈페이지와 같이 불특정인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러한 오픈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연구회는 현행 인터넷상의 규율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로서 서비스의

편중이나 불공평,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보장 의무와 더불어, TV처럼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김영덕, 2008).

<표 2> '연구회'의 콘텐츠 구분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유통하는 콘텐츠			
공연성이 없는 것	공연성이 있는 것		
'통신의 비밀' 보장 (개인서신 등의 특정인 간의 통신)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 ²⁾ 을 갖지 않은 것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것	
	오픈 미디어 콘텐츠(가칭) - 불특정인에 의해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 통신의 송신(홈페이지 등)	미디어 서비스(가칭)의 콘텐츠 - 현재의 방송 - 향후 등장하게 될 유사 방송 콘텐츠 전송 서비스 -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 정도에 기초한 유형화	
		일반 미디어 서비스(가칭) - 원칙적으로 현재 방송 규제를 완화	특별 미디어 서비스(가칭) - 현재의 지상파 TV 방 송에 대한 규율을 원 칙적으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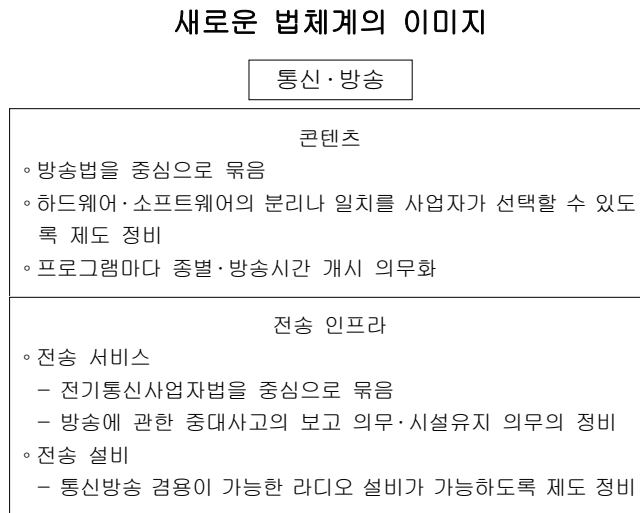
자료: 總務省(2007)

그 후 2008년에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関する検討委員会, 이하 '검토위원회')'가 만들어져 '정보통신법(가칭)'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20회에 걸친 논의 끝에 '검토위원회'는 2009년 8월 26일에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한, '통

2)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특정한 사회적 영향력'이란, '현재의 방송이 직접적이고, 순간적으로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 대해 동시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미디어로서 가지는 다른 정보통신 미디어와 비교해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정한 사회적 영향력' 정도를 평가하는 판단지표로는 '콘텐츠의 종류', '서비스의 품질', '접속의 용이성', '시청자 수', '유료·무료의 구분'이 있다(총무성, 2007).

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의 위상-2008년 자문 제14호에 대한 답신(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の在り方-〈平成20年諮問第14号〉答申, 이하 ‘답신’)을 발표하였다. ‘답신’은 그동안의 통신·방송 통합법에 대한 총무성의 논의결과를 잘 보여주었다. 이에 의하면 당시 법체계는 “방송 관련 4개, 통신 관련 3개(NTT법 포함), 전송 설비 관련 2개의 법률이 있으며, 통신과 방송 중 지정된 용도로만 무선국을 사용해야 하며, 유선방송전화는 다른 통신 서비스와는 다른 진입 및 기술규제가 적용되며, 방송중지 사고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고, 방송시설-방송업무 사업자 일치 여부에 대한 방송 사업자의 선택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답신’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목표로 통신·방송 법체계를 연구하였으며, ‘새로운 법체계(新たな法体系)’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 ‘검토위원회’의 새로운 법체계(안)



출처: 總務省(2009)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수평규제의 도입, 콘텐츠와 전송시설의 분리규제라는 관점에서 ‘답신’의 법체계는 ‘최종 보고서’의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작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 기존에는 독자적인 레이어로 인정되었던 플랫폼³⁾ 레이어를 없애고, 이를 콘텐츠 레이어에 포함시킨 2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플랫폼 레이어가 독립적인 레이어로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2007년 '최종 보고서'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최종 보고서'는 플랫폼 레이어를 독립시켜 별도의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신흥 서비스의 공정경쟁 확보 정책과 이용자 보호정책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總務省, 2007). 그러나 2009년 '답신'에서는 플랫폼을 독자적인 레이어가 아닌 콘텐츠 레이어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總務省, 2009).

그리고 '최종 보고서'와 '답신'은 '방송'의 개념과 명칭에 있어서도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2007년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는 '방송'의 개념을 없애고 '미디어 서비스(メディアサービス)'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최종 보고서'가 제안했던 미디어 서비스란 현재의 '방송'과 향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 방송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최종 보고서'는 이러한 미디어 서비스를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일반 미디어 서비스와 특별 미디어 서비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總務省, 2007).⁴⁾ 그러나 2009년 '답신'에서는 콘텐츠 규제 범위를 현재의 '방송'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미디어 서비스'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또한 방송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과 유한한 주파수를 점용한다는 사실을 들어 '새로운 법체계' 하에서도 방송에 대한 규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總務省, 2009).

- 3)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에서의 플랫폼이란, 물리적인 전기통신설비와 연계하여 다수의 사업자끼리 또는 사업자와 다수의 사용자를 중개하고, 콘텐츠 전송, 전자 상거래, 공적 서비스 제공, 기타 정보 유통의 원활화 및 안전성·편리성 향상을 실현하는 서비스로서, 네트워크에서의 인증·과금·결제 서비스, 포털 서비스, 인터넷몰, 검색 서비스, OS 등의 매우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한 개념이다.
- 4) 총무성은 사회적 영향력을 미디어 서비스의 구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인터넷 영상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사회적 영향력(a clear impact on,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general public)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체계의 도입을 지향'하는 EU의 규제체계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總務省, 2007).

특히, ‘답신’의 통신·방송 법체계가 2007년 ‘최종 보고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정보통신법(가칭)’으로 명명하였던 통합 법체계에 대해,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새로운 법체계’로 명명하였다는 점이다(총무성, 2009). 이는 통신·방송을 하나의 통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최종 보고서’의 안에서 한 발짝 물러나, 기존의 통신·방송 관련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답신’의 내용 중 먼저 콘텐츠 레이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 레이어는 전통적인 방송의 개념을 유지하고, 방송법을 중심으로 관련 4개 법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둘째, 일정 정도 이상의 방송을 확보하기 위한 틀(소위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지상파방송과 특별 위성방송은 ‘기본 계획’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방송사 경영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한다. 즉, 방송 시설의 설치와 방송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자가 수행할지 혹은 여러 사업자 분담하여 수행할지에 대해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개정 전에는 제도적으로 각 방송사업자가 일치하거나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서 방송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넷째, 공연성이 있는 오픈 미디어 콘텐츠 중 불법 또는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답신’에서는 전송 서비스 레이어의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규제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케이블 TV방송 시설에 대한 시설 사용 승인 의무(소위 ‘채널임대 의무’)를 폐지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선방송전화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이에 일반 전송 서비스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케이블TV 사업자 모두가 지역 독점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케이블TV 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유연한 사업운영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시설설치에 관한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의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발생

한 방송중지 사고에 대비하고, 방송 수신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고 보고 의무, 설비유지 의무 등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전송 설비 레이어와 관련해서는 전파 이용의 유연화를 위해 통신과 방송 두 개의 목적으로 모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무선국의 면허 제도를 정비하고, 화이트스페이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살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표준의 책정 제안제도 및 기술기준 책정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전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위해 무선설비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무선설비에 적합하지 않는 사항을 인지할 경우의 보고제도 및 무선국의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總務省, 2009).

〈표 3〉 '답신'의 주요 내용

적용 레이어	주요 내용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이라는 명칭과 개념을 유지하며, 현행 방송법을 중심으로 방송 관련 4개 법률을 통합 ○ 일정 정도 이상의 방송을 확보하기 위한 틀(소위 '기본 계획')을 마련 ○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 확대 ○ 프로그램 종별 분류에 관한 공표 ○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表現の自由享有基準) 개정 필요 ○ 불법 또는 유해한 오픈 미디어 콘텐츠는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조치
전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통신 관련 4개 법률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임대 의무'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에 일반 전송 서비스 법률을 적용 ○ 방송에 관한 안전·신뢰성 확보
전송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이용의 유연화 ○ 민간의 창의적 기술도입의 촉진 ○ 신속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신제품 도입의 촉진 ○ 전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2. 민주당 정부에서의 통신·방송 법체계 개정 추진과정(2009년 9월~현재)

2009년 8월 30일 일본정권이 54년 만에 교체됨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었던 통신·방송의 통합법체계 논의도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2009년 10월, 당시 총리였던 하토야마(鳩山) 총리는 자민당 정권에서 만든 정보통신법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통신·방송 통합법(‘정보통신법(가칭)’의 승인을 반대하였다(연합뉴스, 2009. 10. 18). 이에 발맞추어 총무성은 ‘정보통신법(가칭)’의 국회 제출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CNET Japan, 2009. 11. 18), 2010년 1월에는 기존의 8개 통신방송 관련 법률을 4개 법률로 통합시킨 개정 방송법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당시 총무성이 제안한 개정 법률의 특징은 기존 방송 관련 4개 법안(방송법, 유선TV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법, 전기통신서비스이용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통합하고, 기존 통신 관련 2개 법안(유선방송전화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하며, 전파법과 유선전기통신법은 각각 개정하는 것이었다(朝日新聞, 2010. 1. 7).⁵⁾ 그 후 총무성은 2010년 3월에 ‘방송법 등의 일부 개정안(放送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일본 여당과 야당은 총무성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야당은 총무성의 자문기관인 전파감리심의위원회에 독자적인 조사권과 총무성 장관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문에 대해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였다(日本經濟新聞, 2010. 5. 20). 여당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였으며, 해당 조문을 수정한 개정안이 2010년 5월 27일에 중의원을 통과할 수 있었다(日本經濟新聞, 2010. 5. 28).

그 뒤 참의원 통과를 위해 일본의 여당과 야당은 11월 6일부터 협의에 들어갔으며,

5) 당시 총무성이 내놓은 개선안의 핵심은 방송사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무선국을 통신과 방송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의 육성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반영한 대표적인 조항은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의 완화이다. 이는 특정 방송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다른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하려고 할 때 방송대상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는 10% 이하,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20%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정 방송법은 이를 33%까지 완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日本經濟新聞, 2010. 1. 8). 이러한 개선안의 내용은 2010년 11월 의회를 통과한 방송법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므로 방송법 등의 개정 내용을 설명할 때 다루도록 하겠다.

11월 19일에 여당인 일본 민주당이 “방송기기 제조사의 임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NHK 회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신문사와 방송국 등을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는 ‘크로스 미디어 소유’의 규정을 3년 이내에 검토한다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다(日本經濟新聞, 2010. 11. 19) 합의한 개정 법률은 2010년 11월 26일에 참의원을 최종 통과하였는데(日本經濟新聞, 2010. 11. 27), 이러한 방송법 개정은 일본에서 1950년에 방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정된 것이었다(안창현, 2010).

Ⅲ. ‘정보통신법(가칭)’의 무산 원인

일본에서 ‘정보통신법(가칭)’으로의 통합이 무산된 표면적인 요인은 일본의 정권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54년 만에 일본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다. 이에 일본 민주당은 집권 전부터 대규모 개혁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표 4>와 같이 ‘우정사업, 정보통신, 방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총 8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표 4> 일본 민주당 ‘우정사업, 정보통신, 방송’ 분야의 8대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사업의 근본적 검토 - NHK 개혁 - 통신방송위원회(일본판 FCC)의 설치 - 통신·방송 행정의 개혁 - 전파의 유효사용 - 정보격차의 해소 -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이행 -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2차 이용 촉진

출처: 안창현(2009)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은 이처럼 통신 및 방송 관련 정책에 대해 이전 정

부가 추구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예고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통신·방송의 통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반영하듯이 2010년에 추진된 통신·방송 법체계 개정에서는 통신·방송 관련 법률 전체의 통합이 보류되었고, 기존의 법률을 4개로 통합하고 대신 개정안에 일본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정보통신법(가칭)’ 무산의 배경에 대해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 정부의 기존 자민당 정부의 통신·방송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朝日新聞, 2010. 4. 10).

그러나 정권교체만으로 일본 ‘정보통신법(가칭)’이 무산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정권교체 외에 ‘정보통신법(가칭)’ 무산에 영향을 준 원인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총무성이 정권교체 전부터 ‘정보통신법(가칭)’으로의 완전 통합이 아닌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검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2009년 8월 ‘답신’의 내용을 보면, 콘텐츠·전송 인프라로 구분하여 규제한다는 틀은 기존의 논의와 동일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을 ‘방송법(콘텐츠)’과 ‘전기통신사업법(전송인프라)’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總務省, 2009). 또한 ‘답신’에서는 기존에 통신·방송의 통합법을 부르던 ‘정보통신법(가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법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역시 총무성이 기존의 틀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통신·방송 법체계를 고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이처럼 총무성이 ‘정보통신법(가칭)’으로의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원인이 중요한데, 본고에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보통신법(가칭)’에서의 콘텐츠 규제에 대한 논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통신과 방송 분야의 기술혁신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이에 걸맞게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放送研究と調査, 2010. 6. 1). 이러한 목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 2007년 ‘최종 보고서’의 ‘정보통신법(가칭)’ 법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정보통신법(가칭)’ 체계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콘텐츠 레이어에 대한 신중한 규

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7년 '최종 보고서'는 공연성의 여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각 콘텐츠에 대해 차등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송매체의 특징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고, 공연성의 여부와 사회적 영향력만으로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규정들이 콘텐츠 레이어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즉,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어떤 콘텐츠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정하는 것은 애매한 문제이며, 사회적 영향력 지표를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미디어를 유형화(類型化)할 경우 정부의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總務省, 2007b).⁶⁾ 또한 지상파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가 전송 인프라로 간주되어 총무성의 면허를 받는 규제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콘텐츠 분야에서도 총무성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放送研究と調査, 2010. 6. 1; 東京読売新聞, 2009. 10. 18).

또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규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였다. 총무성은 '최종 보고서'에서 인터넷 콘텐츠라 할지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다면, 이에 따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터넷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는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放送研究と調査, 2010. 6. 1; 總務省, 2007b).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콘텐츠 레이어에 대한 '정보통신법(가칭)'에서의 규정들이, 규제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東京読売新聞, 2009. 8. 20) 통신·방송 법체계 개정 취지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으며, 이를 고려하여 총무성은 이미 정권교체 전부터 '정보통신법(가칭)'으로의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일본 '정보통신법(가칭)'의 무산은 기존 '정보통신

6) 이러한 우려는 거의 모든 콘텐츠 관련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공영 방송 NHK와 TV 아사히 등 민영 지상파 방송사, 일본 신문협회 등은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콘텐츠는 제작자의 자유에 맡기고 자주적인 노력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總務省, 2007b).

법(가칭)'이 가지고 있었던 논쟁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일본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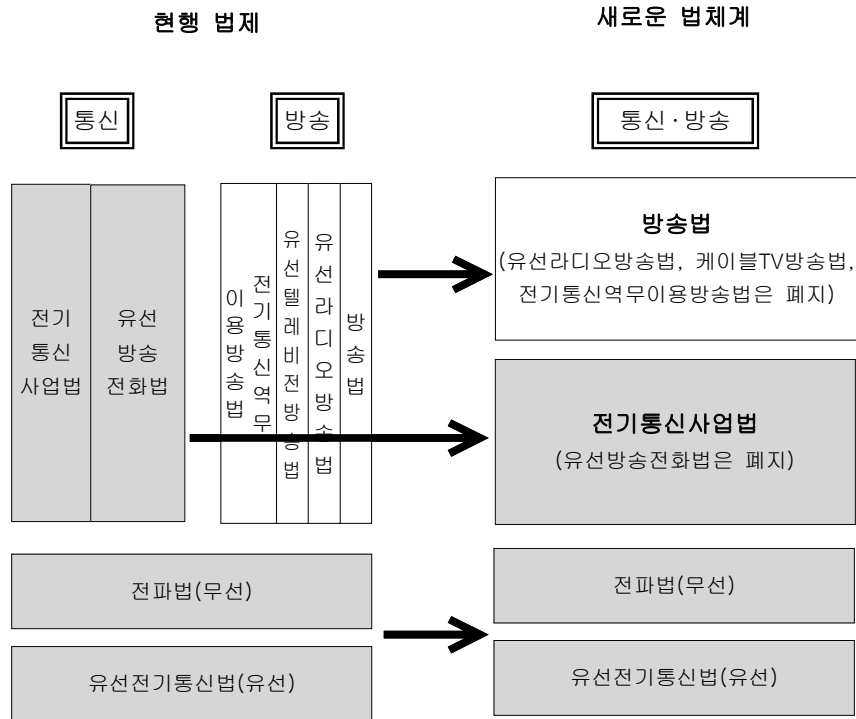
IV. 2010년 통신·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과 시사점

1. 통신·방송 관련 법률 개정 내용 검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0년의 일본 통신·방송 법체계는 기존 8개의 통신·방송 관련법을 4개로 통합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림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방송 부문에서 유선라디오방송법, 케이블TV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폐지하고 이를 방송법으로 통합시켰으며, 통신 부문의 경우 유선방송전화법을 폐지하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통신과 방송에 걸쳐 있는 법률인 전파법과 유선전화통신법은 각각 개정하였다.

우선 방송법 개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여섯 가지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방송의 진입에 관한 제도 정비통합, 탄력화'에서는 방송을 '기간방송(방송전용 또는 우선적으로 방송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과 '일반방송(기간방송 외의 방송)'으로 구분하였다(總務省, 2010). 이러한 분류는 분류된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기간방송에는 지상파방송과 BS위성방송, 동경(東經) 110도 CS위성방송이 해당되며, 일반방송에는 동경 124/128도 CS방송, 케이블TV방송, IPTV가 포함된다(안창현 2010). 또한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기간방송 중 무선국의 설치 및 운영 업무와 방송 자체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원하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무선국에 해당하는 면허(免許)와 방송 업무에 해당하는 인정(認定)을 분리하는 제도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 두 업무가 일치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만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일반방송에 해당하는 케이블TV방송, 케이블라디오방송 및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에 대해서는 허가와 등록으로 이원화된 진입제도를 개정하여 등록으로 통일하였다(總務省, 2010).

[그림 4] 2010년 일본 통신방송의 법체계 변화



출처: 總務省(2010)

둘째,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기본적인 부분을 방송법을 통해 규정’하였다. 일본 방송사업에서 소유규제의 근거가 되었던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은 그동안 법률이 아닌 ‘방송국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특징은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을 완화시키는 대신 법률로 그 위상을 상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기업이나 단체가 복수의 기간방송 사업자를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서 금지하지만, 그 지배의 기준을 20%에서 33%로 완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안창현, 2010).⁷⁾

7) 이러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완화는 방송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던 2008년 매스미디어 집중 배제원칙 완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셋째는 ‘방송의 안전·신뢰성의 확보’이다. 특히 방송중지 사고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설비의 유지, 중대사고가 발생 시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總務省, 2010).

넷째는 ‘프로그램 종류의 공표’ 제도이다. 새롭게 개정된 방송법에서도 기존 방송법 제3조의2 제2항과 같은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TV방송과 BS방송은 교양·교육·보도·오락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이를 조화롭게 방송해야 한다는 원칙(일명 ‘프로그램 조화 원칙’)이 존재한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지는 방송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고, 방송의 유형과 각 유형의 방송시간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放送研究と調査, 2010. 6. 1). 이에 대해 개정안은 ‘프로그램 조화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간방송(종합편성을 하는 기간방송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일부 BS방송에 해당함)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의 종별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여, 프로그램 종류의 분류는 여전히 방송 사업자의 판단에 맡기지만, 분류 기준과 프로그램 종류, 종류별 방송시간 등은 발표하도록 했다(안창현, 2010).⁸⁾

다섯째는 ‘유료방송의 제공조건의 설명 등’이다.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유료 기간방송의 약관 신고를 완화하고, 유료 일반방송의 약관의 신고를 폐지하는 한편, 계약자들에 대한 제공조건의 설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總務省, 2010).

여섯째는 ‘재송신 동의 관련 분쟁처리에 관한 알선·중재제도의 정비’이다. 지상파 TV 재송신 동의를 둘러싼 분쟁이 신속하고, 원활하며, 전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의 알선 및 중재제도를 정비하였다(總務省, 2010).

또한 전파법 관련 개정사항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방송 겸용 무선국 제도의 정비(通信·放送兩用無線局の制度の整備)’를 통해 무선국의 주요한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개의 무선국을 통신과 방송의 쌍방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국의 면허제도를 개정하여, 면허를 받은 후 허가를 받은 무선국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

8) 이번 개정안에 프로그램 종류 공표제도가 개정된 배경에는 지상파TV를 통한 홈쇼핑 프로그램 증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홈쇼핑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방송 사업자의 판단으로 ‘교양’, ‘오락’, ‘광고’, ‘기타’로 분류되었는데, 개정 방송법에 따라서 각 방송 사업자는 홈쇼핑 프로그램의 분류 방법이 적절한지를 설명해야 한다(放送研究と調査, 2010. 6. 1).

상한선을 0.017와트에서 1와트로 개정하여 1와트 이하로 출력하는 무선국은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휴대전화 기지국의 면허 포괄화'를 통해, 휴대전화 기지국 중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기지국 등에 대한 포괄 면허를 받은 경우는 기지국 당 별도의 면허 없이 사후 신고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사항으로는, '분쟁처리 기능의 확충'을 통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전기통신 사업자 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분쟁, 전기통신 사업자 간 철탑 등의 제공을 둘러싼 분쟁 등을 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에서 개칭)의 알선 및 중재의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분쟁처리 기능의 확충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종 지정 사업자(二種指定事業者)에 관한 접속회계제도 창설'을 통해서 휴대전화의 접속료 산정의 적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경쟁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의 전개를 촉진하는 관점으로 제2종 지정 전기통신사업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해 접속회계의 정비·수지 상황의 공표 의무를 부과하였다(總務省, 2010). 이러한 각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개정 통신·방송법의 주요 내용

개정된 통신·방송법의 종류	주요 개정 내용
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진입에 관한 제도의 정비 및 통합 -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 법률화 - 방송의 안전·신뢰성 확보 -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 구분 - 유료방송 제공 조건 등의 설명 - 재송신 동의 관련 분쟁처리에 관한 알선·중재제도의 정비
전기통신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방송 겸용 무선국 제도의 정비 - 휴대전화 기지국의 면허 포괄화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처리 기능의 확충 - 이종 지정 사업자(二種指定事業者)에 관한 접속회계제도 창설

2. 통신·방송 관련 법률 개정의 시사점

2010년 일본 방송법 등의 법체계 개정은 1950년 방송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60년 만에 이루어진 가장 큰 개혁이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통신·방송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디어 현실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충분한 개혁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放送研究と調査, 2010. 6. 1). 즉,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통신·방송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이를 수용할 만한 통신·방송의 법체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된 법률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도입과 촉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기존의 방송 서비스 역할에 관한 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개정 법률만으로는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2010년 개정 방송법이 왜 이러한 방향을 추구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은 2009년 총무성의 ‘답신’에서 찾을 수 있다. ‘답신’은 ‘방송의 기능과 역할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다양한 통신 서비스가 출현하는 가운데에서도 즉각적으로 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맡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송보급 기본 계획과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총무성, 2009)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2010년 일본 통신·방송 관련법 개정안들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보다는 미디어의 다양성·다원성·지역성을 중시하는 제도설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放送研究と調査, 2010. 6. 1).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이 TV 중심의 전통적인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개정안에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 현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우선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록 ‘정보통신법(가칭)’으로의 완전한 통합법 제정은 무산되었지만, 2010년 개정 통신·방송 관련법은 기존에 8개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법률을 최대한 통합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통신과 방송 융합을 직간접적으로 촉진

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통신·방송 겸용 무선국 제도의 정비'를 들 수 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일본 전파법의 면허체계에서는 무선국을 통신과 방송 중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방송법에서는 무선국의 주요한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개의 무선국을 통신과 방송 두 개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국의 면허제도를 개정하여, 면허를 받은 후 허가를 받은 무선국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TV 방송국이 방송을 송출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그 전파를 통신용으로 사용하여 전자 간판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통신용의 전파를 방송용으로 이용하여 이벤트와 같은 행사 시에 불특정 다수의 모든 참가자에게 정보를 동시에 송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放送研究と調査, 2010. 6. 1).

V. 결 론

본고는 일본의 통신방송 통합법으로 추진된 '정보통신법(가칭)'의 무산 원인과 2010년 최종 개정된 통신방송 4개 법안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2010년 일본 통신·방송 법체계 개정의 특징은 형태적으로는 4개 법률로의 통합, 내용적으로는 TV 중심의 전통적 미디어의 역할 강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총무성의 이러한 선택은 기존 '정보통신법(가칭)'이 가지고 있었던 논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시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일본 통신·방송 관련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법(가칭)'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융합 서비스의 도입과 촉진이라는 최초의 구상에서 크게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10년 개정 통신·방송법이 기존의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규제 하던 관련 법률을 방송과 통신을 중심으로 크게 묶었다는 점,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 통신·방송 관련법에서도 융합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덕 (2008),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서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박민성 (2009), “일본,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 최근동향”, 《방송통신정책》, 제21권 1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안창현 (2010), 日, 60년 만에 방송법 대폭 개정, 《해외방송정보》, 2010년 6월호, KBS.
- _____ (2009), “日, 민주당 정부의 방송정책과 공영방송”, 《해외방송정보》, 2009년 12월호, KBS.
- 《연합뉴스》, (2009. 10. 18), “日 방송·통신 규제 일원화 법안 제정 보류.”
- 최세경 외 (2009),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에서 콘텐츠 규제연구-수평규제체계의 적용과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2009. 12.
- 황주성 (2011), “디지털 컨버전스의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1-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東京読売新聞》, (2009. 10. 18). 情報通信法案の通常国会提出見送りへ・「表現の自由」配慮不十分で.
- _____, (2009. 8. 20), 「情報通信法」答申案を了承・「規制は最小限に」.
- 《放送研究と調査》, (2010. 6. 1). 放送関連法再編・残された課題?60年ぶりの通信・放送法体系見直し?
- 《日本経済新聞》, (2010. 11. 27). 改正放送法が成立.
- _____, (2010. 11. 19). 放送法改正案修正、与野党が合意
- _____, (2010. 5. 28). 放送法改正案が衆院通.
- _____, (2010. 5. 20). 放送法改正案で与野党修正協議
- _____, (2010. 1. 8). 放送局出資上限を緩和、3分の1未滿に.

- 《朝日新聞》, (2010. 5. 27). 放送法改正案が衆院通過.
- _____, (2010. 4. 10). 法体系全面見直しを機に考えたい放送という営みの救い方.
- _____, (2010. 1. 7). 通信・放送, 4法に再編・地方局へ出資上限緩和・融合法案の概要.
- 總務省 (2010). 放送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概要.
- _____ (2009). 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の在り方(平成20年諮問第14号答申).
- _____ (2008). 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ついて(中間論点整理)
- _____ (2007). 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 _____ (2007b)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関する研究会 中間取りまとめ」に対す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 (概要).
- _____ (2006). 通信・放送の在り方に関する懇談會 報告書.
- 《CNET・Japan》, (2009. 11. 18). 情報通信法、次期通常国会での提出が見送りの可能性.